

2025 대학 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에서 알아야 할 사항

유형별 주요 사례중심

삼일회계법인 이 수 진 이사



삼일회계법인



Agenda

- I.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원칙**
- II. 사업비 집행 일반 기준(공통)**
- III. 사업비 집행 점검사례(공통)**
- IV. 사업비 집행 점검사례(사업별)**

I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원칙



1. 대학재정지원사업 규정 체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며, 동 규정 및 각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 정산을 수행합니다.

훈령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2023. 9. 11 일부 개정):

⇒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세부규정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관리·운영 기준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운영지침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사업비 세부 집행 관리 기준 등

1. 대학재정지원사업 규정 체계, 계속

사업수행과정에서 적용되는 상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하며,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칙 등 자체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위법령	
구분	상위법령 및 지침
① 계약방법·절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② 국립대법인 및 공립대	‘국립대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각종 상위 법령, 회계관리 규칙 및 제 규정·지침 등
③ 사립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관련 지침 등

2. 사업비 집행원칙

사업계획 기반 집행

- 사업비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집행
-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 사용
- 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관련 규정 준수

- 사업비 집행기준은 **해당 사업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함(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기준 및 관련 법률 등에 따름)
- 사업비 집행 비목은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라야 함

사용내역 입증(지출)

- 사업비의 집행 수단은 **법인클린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함
- 사업비 집행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구비

사용내역 입증(관리)

- 모든 사업비는 대학의 장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전담부서에서 관리
- 동일 활동에 대해 사업비가 **중복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3. 사업비 정산 기본 점검사항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정산 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점검 사항

- 예산의 집행 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는 동일 사업 연도 내에 발생**하여야 함
 - **사업비 변경 시 절차준수** 여부
 - **법인클린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 및 관리(별도 법인카드 발급)
 - 사업비가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집행**되었는지 여부
 - **항목별 예산편성비율**에 맞게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여부(사업비 집행 비율은 사업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월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예산 비율임)
-
-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
 - 사업비 집행시 **내부 품의** 등 올바른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집행했는지 여부
 - 사업비 집행의 **지급근거**가 있는지 여부
 - 사업비 집행의 **증빙서류**들을 올바르게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특이사항 발생시 합리적인 근거 문서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비 집행 일반기준 (공통)



인건비

인건비

- 교원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수행을 전담하는 직원 등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수행 인력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비용
- 그 밖에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한 조교 등 보조인력에 대한 보수

관련법령

- 인건비 집행 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근무시간, 연차수당, 퇴직금, 인사 관련 모든 사항)
- 퇴직금은 학교의 기존 적립 방식과 동일하게 1) 매월적립 or 2) 1년 경과 시 적립 중 선택하여 집행
- 퇴직금 적립 후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할 경우 기적립한 퇴직금은 반납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 3호)

유의사항

- ‘전담’의 의미 – 해당 사업에 100% 참여를 의미(타사업 및 과제 등에서 인건비를 안분하여 지급하는 행위 금지). 근로계약 및 인사명령 등에서 본 사업에 전담한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불가(일부 사업에서 허용되는 경우 제외)

인건비, 계속

성과급(인센티브)

- 사업비 관리지침상 성과급(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사업비로 집행 가능
- 사업비 관리지침상의 지급비율 준수

유의사항

- 성과급 지급규정 수립 - 사업관리위원회 등에서 사전에 성과급 지급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함
(사업기간말단순 위원회 회의를 통한 지급 X)
- 성과급의 전제 조건이 되는 사업 참여 인원 여부를 정산 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평가는 정량, 정성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평가서류 및 평가의 근거가 되는 실적 등을 증빙하여야 함

인건비, 계속

기본 구비 증빙자료

구분	기본 구비 요청 증빙
인건비 일반	✓ 사업참여계약서(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및 사업 참여여부를 확인 가능한 문서 ✓ 근로계약서(고용형태, 고용기간, 담당업무 등 명시) ✓ 계좌이체에 따른 증빙 자료 ✓ 급여명세서(월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부 신규채용 인력에 한함) 등
※ 두뇌한국(BK) 21 사업 (참여학생 현황 자료)	✓ 참여학생 현황(지도교수, 취업, 휴학, 퇴학 등의 학적 변동 내역 포함)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대상자 학기별(1,2학기) 현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등록증
성과급	✓ 성과급 지급 현황 및 성과평가 서류(해당 시) ✓ 성과급 지급 관련 지출 증빙자료 일체(해당 시)

계약업무처리

계약업무 - 입찰경쟁계약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는 국고 재원 사업임
- 국고 재원 사업비로 집행하는 계약은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 계약 집행절차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함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내용	유의사항
제33조 (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건을 공고하여야 함 (대학 홈페이지, 대학자체입찰시스템, 대학연합입찰시스템, 이비즈포유 등 타 조달시스템에만 공고한것은 적정한 절차를 진행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입찰경쟁 계약건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공고 필요

계약업무처리, 계속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내용	유의사항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중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준수 필요 (긴급 공고가 필요하다며 (ex 입찰서 제출 마감일 3일 전) 대학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는것은 절차 위반임)	입찰공고일 준수
제39조 (입찰서의 제출 · 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전자입찰을 통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시점까지 입찰서류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담합 등의 부정예방에 중요한 규정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서류 접수

계약업무처리, 계속

계약업무 -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또는 조달(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방식으로 계약을 진행
- 다만,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시행령 26, 27, 28조)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내용	유의사항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국가계약법 적용시 수의계약은 법상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 가능

계약업무처리, 계속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구분	내용	유의사항
제26조 ① 항의 3.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가, 바, 사: 현실적 사유로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하여야만 하는 경우 →마, 아: 공급자가 한정적인 경우 (특허, 지정, 고시 등을 증명하여야 함)	다음의 증빙을 갖추어야 함 - 독점공급계약 - 해당 물품이 필요한 근거

계약업무처리, 계속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구분	내용	유의사항
제26조 ① 항의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다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차.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 중소기업의 제품 중에서 국가의 인증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시점에 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빙 필요 (계약시점에 서류 증빙을 갖추어야 함)
제26조 ① 항의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국가유공자, 복지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접 공급 받는 경우 또는 직접 물건을 매각, 임대하는 경우	

계약업무처리, 계속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구분	내용	유의사항
제26조 ① 항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1억원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 학술연구 등,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해당 시점에 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빙 필요 (계약시점에 서류 증빙을 갖추어야 함)

계약업무처리, 계속

계약업무 – 수의계약 지적사례 (분할수의계약)

- **분할 구매** : 거래상대방과 물품구매, 용역제공내역이 동일함에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예시) 동일거래처에 대해 연계하여 사용되는 연구장비 2종을 분할 구매
- **연속된 구매** :
(예시) 1차 조명 교체 후 동일한 조명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2차, 3차 구매에 걸쳐 3천만원 이상 집행
- **연간계약 미실시** : 동일한 내용의 물품구매, 용역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여 연간 합산금액이 수의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 진행
(예시) 매월 약 450만원 상당의 소독용역을 연간 집행하여 총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집행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1학과와 2학과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거래처와만 거래** :
(예시) 매 건 상이한 집행 건이나 연간 1억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특정거래처만 이용, 수의계약 체결
- **동일, 유사한 물품을 학과별로 구매하여 전체 합산시 수의계약금액 한도를 초과**

계약업무처리, 계속

유의사항

- 계약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구매 규모에 대하여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구매금액을 고려하여 계약 방식(수의계약 가능여부)을 검토
- 추가적인 소요가 있어 구매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시점에라도 비교견적을 받거나, 불가피한 상황임이 입증되어야함.
- 동일업체와 다수 거래 진행시 각 계약 건의 목적 및 내용이 별건으로 구분되어야 분할수의계약으로 보지 않음

기본 구비 증빙자료

- ✓ **입찰계약**: 입찰공고(나라장터) 서류, 평가서류, 계약 관련 서류, 이외 지출 증빙자료 일체
- ✓ **수의계약**: 수의(소액) 견적 입찰서류(나라장터에 공고), 수의계약 사유서, 계약 관련 서류, 이외 지출 증빙자료 일체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관리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 관련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1)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각 사업별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
-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관련 사업비 관리지침상 주요 일반 규정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 구입 시 대학 자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의 사전승인 후 집행가능
 - 1억원 이상의 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운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사전 승인 필요)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 개별 기자재에는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 구입재원(대학혁신지원사업), 구입연월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유의사항

- 개별단가기준 3천만원 ~1억원 , 1억원이상의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는 사업비 지출 전 관련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
- 사업종료시점 임박하여 사업비 소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관리, 계속

기본 구비 증빙자료

- ✓ 기자재 활용계획서
- ✓ 거래명세서 혹은 구매의뢰서(사업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 ✓ 시험제품, 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 ✓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기타 사업비

예금이자 및 수익금

- **예금이자:**
 - 사업기간 내 발생 이자: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 이자: **국고 반납**
-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의 수익금 및 유사 수익금 : 국고로 반납**
 - 계약 관련 위약금 수입, 해외 집행금액 중 환율차이에 따른 수익금, 조달청 계약에 따른 업체의 부당이익금 수입금
 - 4대보험 정산 반환금
 - 법인카드포인트와 같은 부수적 수익

관련규정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 조 (예금이자 및 수익금 등의 처리)

- ① 사업기간동안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되, 연도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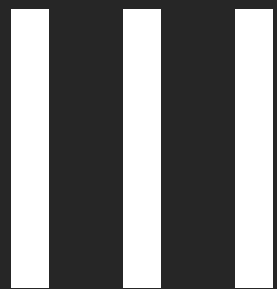
.....(중략).....

- ④ 계약 관련 위약금 수입, 해외 집행금액 중 환율차이에 따른 수익금, 조달청 계약에 따른 업체의 부당이익금 수입금, 4대보험 정산 반환금 등 기타 수익과 카드포인트 등 부수적 수익은 국고로 반납하며,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시 수익발생내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세무 관련 참고사항

사업비 집행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세, 법인세

- **인건비 관련 세무 처리:**
 -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상근 직원은 근로소득, 일용직·자문위원 등은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필요
 - 상근직원 근로소득에 대한 퇴직금, 4대보험: 인건비 정산 시 포함 여부 확인
- **전문가자문료, 강사료 지급:**
 -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료, 강사료 등 지급 시 원천징수 (기타소득 8.8%, 사업소득 3.3%)
 - 계약서 작성 필수
 - (주의)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사업비 집행금액이 한도 내 집행금액인지 여부 확인 필요
- **(이자수익) 법인세 납부액/환급액:**
 - 이자수익 관련하여 원천징수되는 법인세는 차감한 후의 금액을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
 -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환급받았다면 환급받은 금액은 반환대상



사업비 집행 점검사례 (공통)



인건비

관련규정

- 각 사업의 관련 규정에서 인건비 총액 한도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총액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여야 함
- 퇴직금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상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 없음)

주요 지적사례

- **연도별 사업비 총액의 인건비 지급 한도(예시 : 25%, 각 사업의 규정에 따름)를 초과하여 인건비 부담 집행**
예시) 해당 사업의 인건비 지급 한도는 총 사업비의 25%이나, A대학은 사업비 총예산 6,949,170,245원 중 인건비 항목으로 1,788,113,037원을 지출(25.73%)
-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 미반환**
예시) 사업비로 참여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집행하였으며,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였음에도 관련하여 집행했던 퇴직적립금을 미반납

계약업무처리

관련규정

- 사업비로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함
 - 제33조 (입찰공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
 -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제5호

주요 지적사례

- **경쟁입찰 계약절차 미준수(조달청 나라장터 미공고)**
예시) 경쟁입찰 계약건에 대하여 나라장터가 아닌 학교자체시스템 등을 통해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 **계약절차 미준수(조달청 나라장터 미공고)-수의계약 건적입찰**
예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나라장터에서 공고 후 수의(소액) 건적입찰을 하지 않고 학교시스템 등을 통하여 입찰 공고 후 수의계약을 체결
- **수의계약조건을 미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예시 ①) A대학은 해외현장조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여행사와 수의계약 체결(집행금액: 24,560,000원)
예시 ②) B대학은 교육자료실 구축을 위한 이사를 위한 용역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 (집행금액: 26,400,000원)
예시 ③) C대학은 연구용역계약 체결시 학술연구이므로 수의계약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의계약 체결 (집행금액: 100,000,000원)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관리

관련규정

- 개별단가기준 3천만원 ~1억원, 1억원이상의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는 사업비 지출 전 관련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

주요 지적사례

- **3천만원 초과 기자재 구매건에 대한 대학자체 심의 누락 or 한국연구재단 사전승인절차 누락**
예시) 교육용기자재 등 구매 건별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실험·실습장비, 기자재 구매건에 대하여 대학자체 심의 누락 또는 한국연구재단 승인을 누락한 채 사업비를 집행함. 사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집행으로 분류
- **NTIS 장비등록서비스 등록 지연**
예시) 사업비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기자재 구매 시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http://www.zeus.go.kr>)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하나 30일을 초과하여 등록하거나 미등록건 확인됨

기타 – 사업기간 외 집행

관련규정

- 각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 및 집행이 완료되어야 함
(*) 사업마다 회계연도 종료 이후 지출 인정 시기 상이하므로 각 사업의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 필요)

주요 지적사례

- **사업연도 이후 개최한 행사(워크숍) 관련 경비 부당 집행**
예시) A대학교는 사업연도 이후 개최한 워크숍(행사기간 2024. 3. 1~ 3. 2)과 관련된 경비를 2023년 사업비로 집행
- **사업연도 종료 이후 구독이 개시되는 교육용 SW 등 라이선스 비용 부당 집행**
예시) 사업비로 집행한 라이선스의 구독기간(24. 3. 1~25. 2. 28)이 사업(23. 3. 1~24. 2. 29)종료 이후 기간임
- **다년도 라이선스 비용 부당 집행**
예시) 2023년 사업비로 4개년치의 교육용 SW 등 라이선스 구독비용을 집행
- **사업연도 이후 기자재 검수**
※ 구매, 용역, 공사 모두 ‘납품’ 및 ‘검수완료’까지를 지출원인행위로 보아야 함(출납폐쇄일은 각 사업 규정마다 상이)
예시) 기자재 구입의 지출원인행위인 검수일자(24. 3. 14)가 사업기간(23. 3. 1~24. 2. 28) 이후 완료됨

기타 – 사업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

관련규정

- 모든 사업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주요 지적사례

- 프로그램 운영시 단순 체험활동비, 관광성 비용 등에 부당 집행, 사업과 무관한 여비 부당 집행
(*) 해외·국내연수, 사업과 관련없는 외유성(뮤지컬, 유람선, 야구장, 놀이공원 등 입장료) 경비 집행 불가
예시 1) A대학은 사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놀이공원 입장료 등 사업과 무관한 관광성 비용 집행
예시 2)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증명자료가 부족한 일정의 국외여비를 부당 집행
- 단순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 부당 집행
예시) 교직원의 드론항공촬영사 자격증 발급비, 컴퓨터활용자격시험, 외국어시험 응시료 등 비용집행
- 개인사유로 인한 항공권 최소 수수료 부당 집행
예시) 국외 출장 관련 항공권을 개인사유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취소수수료를 사업비로 부당 집행

기타 – 대학 자체 지급기준 초과 집행 등

관련규정

- 해당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규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 대학에서 정한 자체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주요 지적사례

- **여비 초과 집행(출장, 워크숍, 연수 등 프로그램 진행시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 여비를 대학 자체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예시) 국외출장을 용역계약을 통해 추진하면서 자체 국외여비규정보다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용역비) 집행
- **강사료, 특강료, 자문료 등 집행시 자체 기준 초과 집행**
예시 1) 교직원의 OO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외부강사에게 강사료(원고료 포함) 외 추가로 원고료 중복 지급, 규정 초과지급 등
예시 2) 특강행사를 외부 용역 업체와 계약시 대학의 강사료 지급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
- **해외연수프로그램 선발기준 미충족 학생의 연수비 부담 지원**
예시) 해외연수프로그램 지원 대상(토익점수 745점 이상) 학생이 아닌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연수비 부담 지원

기타 –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 목적 업무를 위한 경비 집행

관련규정

-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온 일반적 업무 및 경상경비는 교비로 집행하여야 함

주요 지적사례

- **대학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교수 등 교직원 연수비, 워크숍,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등의 행사 경비 부담 집행**
예시) A대학교는 신입교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강사료 등 관련 경비를 부담 집행함
- **학교 자체 행사경비를 사업비로 집행**
예시) OO학과 40주년 기념행사 및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관련 경비를 사업비로 부담 집행
- **대학의 통상적인 업무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소프트웨어(한글, MS오피스 등) 구입**
예시)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Office365 사용자 계정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

기타 – 회의비

관련규정

- 회의비와 관련하여 회의는 실제로 개최하고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함.
※ 회의록의 회의 날짜, 장소, 시간은 회의비 집행 영수증의 세부내역과 그 연계성이 설명 되어야 함
(회의록과 회의비 집행영수증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 인정 불가)

주요 지적사례

- **회의일자와 회의비 집행일자가 상이(ex. 정기 회의비를 일시에 집행, 회의록 일자와 회의비 집행증빙 일자 불일치 등)**
예시) 회의일자에 회의비를 지출하지 않고 특정일에 회의비 총액을 거래처에 일괄 계좌이체
- **대학 자체 회의비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ex. 1인당 회의비 한도 초과 집행, 심야회의비 집행 등)**
예시) 대학의 회의비 자체기준이 1인당 3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집행단가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회의비를 집행
- **회의록의 참석인원과 증빙(사진) 인원 불일치**
예시) 회의록상의 참석자는 10명이나 증빙으로 제출한 회의록 사진상에는 회의 참석인원으로 3명만 확인됨
- **출장여비와 회의비 이중 집행**
예시) 회의비 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출장 중인 인원을 회의 참석자에 포함하여 회의록을 제출

기타

관련규정

- 사업비의 집행 수단은 법인클린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함

주요 지적사례

-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사업비 집행
- 사업 전담인력의 개인계좌로 과 운영비를 매월 지급한 후 사업비 집행
예시) 별도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1년동안의 과 운영비를 전담인력 개인계좌에서 집행

IV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사업별)



4단계 BK21사업 (대학원 혁신 포함)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

- [규정]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BK21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 14조 5항
- [지적]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 대하여 연구장학금과 인건비성 경비(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대가)를 중복 지급

2.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과제종료 2개월전 검수 미완료

- [규정]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활용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임박 시 사업비 소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2개월 이전에 검수완료 되어야 한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 30조 4항
- [지적] BK21 대학원생 맞춤형 교육 및 연구환경 구축 건축공사, 교육연구 환경 구축사업 가구비품 구매, 초저온 전자현미경 연계형 형광현미경 구입 등을 교육연구환경개선비로 집행하였으나 사업종료 시점 2개월 내 검수를 완료하지 않음

4단계 BK21사업 (대학원 혁신 포함), 계속

3. 사업무관 교육연구환경개선비 집행

- [규정]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공용 연구공간 등 대학원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강의실, 실험·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사업행정실 등)을 안전·환경 개선비로 집행할 수 있음. ⇒ 교육연구환경비 개선은 대학원생들이 사용하는 공용연구공간 개선비로 사용이 가능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 30조 1항 및 3항

- [지적 1] A 대학은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실험실, 연구실이 아닌 라운지(공용공간) 조성 공사비에 집행하여 4단계 BK21사업과 무관한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함
- [지적 2] B 대학은 중앙도서관 자료실 서가 구입 및 장서 이전 용역비를 대학원 혁신지원비로 집행함. 중앙도서관은 범용성 교육 및 연구공간에 해당하므로 대학원생 전용 공간에 대한 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음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1. 주차권 집행

- [규정] 사업과 무관한 비용은 주요 집행 제한항목임
 -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지적] 행사 및 교육 진행시 외부참여인원의 대학 유료주차장 주차비를 사업비로 부당 집행

유의사항

- 사업 참여인력(참여 학사조직의 교원 및 학생, 사업단/조직 직원 등)이 아닌 관계자에 대한 LINC 3.0 사업비 집행은 불가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계속

2. 보직수당, 성과급 및 인센티브 초과 지급

- [규정] 보직수당, 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총 합산액은 국고지원금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계상·집행 가능하며, 연간 1인당 최대 500만원(합산 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 [지적] 사업비 관리 운영지침상 1인당 보직수당, 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총 합산액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

3. 현장실습 숙박비

- [규정]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의 집행시 교통비, 숙박비의 지원 범위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부수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임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 [지적]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하여 1인 1일 2만원으로 계산하여 1달에 40만원의 숙박비를 사업비로 지원. 대학 소재지와 동일한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에서 실습한 경우, 주거비(월세)가 현장실습에 따른 직접 발생비용인 것으로 볼 수 없음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주거비(월세) 지원은 부적정)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계속

4.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 지급 기준 초과

- [규정]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50% 이내를 지원하며 1인당 국고지원금은 최대 7천만원(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 초과 불가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 [지적] 산학협력중점교수 A씨의 총 인건비는 43,306,130원으로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국고지원금으로 인건비의 50% 이내 금액인 21,653,065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1. 내부자를 위한 기념품 지급

- [규정]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신입생 모집공고, 대학 브로슈어(리플릿), 단순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 교직원 및 사업참여자 개인에 대한 포상 성격의 비용(단순 기념품 제작비, 선물비, 경조사비, 화환 등)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지적] RIS 사업 성과보고회, RIS 업무협약식 개최 참여 인원(사업 참여대학 총장, 부총장 및 교수, 보직자 등 교직원)에게 사업비로 집행한 기념품을 제공

2. 승용차 렌탈비, 취소수수료를 사업비로 집행

- [규정] (주요 집행 제한 항목)
 - 사업과 무관한 사업운영 경비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지적] RIS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공용사용목적으로 렌트한 차량(제네시스)의 렌트비, 렌트취소수수료를 사업비로 집행. 대학 감사 과정에서 개인 사용분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확인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계속

3. 사업미참여 기관에 비용 지원

- [규정] (주요 집행 제한 항목) 기업지원·협력 활동비
 - 사업 미참여기관, 지역 외 기업에 대한 지원비 집행
 -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 [지적] 실적보고서 상 참여기업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업에 사업비로 비용(지도수당 등) 지원
연차 실적보고서 취합, 제출 : '24. 01. 17
참여기업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협약체결 : '24. 01. 26
참여기업과의 업무 종료 (자문 종료) : '24. 02. 27

유의사항

- 사업의 특성상 참여기업을 상시모집하고 있으므로, 최종 참여기업 리스트를 최종보고서에 반영 필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1유형), 직업전환교육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HiVE 2유형)

1. 참여인력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 원소속기관 성과급과 중복지급 불가(성과급 이중지급 건)

- [규정] 인건비 (사업성과 우수자, 사업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교원, 교직원, HiVE센터 구성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음. 성과급은 연도별 전체사업비 2%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성과급 지급에 대한 컨소시엄 자체기준* 수립 후 집행 가능
 -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기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나눠먹기식 지급 불가
 - 사업참여 인력 신분이 공무원일 경우 원소속과 동 사업 성과급에서 이중 지급 불가
-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 [지적] 사업참여 인력 신분이 공무원인 인원에 대하여 원소속기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였음에도 동 사업비로 성과급을 집행 (성과급 이중 지급)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

1. 연구수당 초과지급

- [규정] 연구(교육)수당은 사업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해외 현지 협력대학과의 국내외 연구(교육) 활동 관련된 경비(또는 수당)으로써 월 40만원 이내(연 480만원) 내에서 수령자에게 원천징수 후 직접 계좌 이체해야 함
*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 사업비 세부 집행 관리기준
- [지적] 해당 사업의 연구수당은 인당 월 40만원까지 지급가능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집행. 초과 지급분은 반납 조치됨

감사합니다

www.samil.com

© 2025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